##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상훈·김성원

김위상 · 정동만 · 구자근

최보윤 · 서천호 · 윤한홍

박덕흠 • 최수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'가로수 식재(植栽)'를 '가로수 조성·관리'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, '도시림, 생활림'을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'도시숲, 생활숲'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아울러 산주·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임업기계장비 임대·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제2호아목 중 "가로수 식재(植栽)"를 "가로수 조성·관리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"도시림, 생활림, 학교숲"을 "도시숲, 생활숲, 숲경영체험림"으로 한다.

제108조제1항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파. 임업기계장비 임대·위탁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6조(사업) ① 지역조합은 그	제46조(사업) ①			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				
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				
부를 한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경제사업	2		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			
아. <u>가로수 식재(植栽)</u> 및 조	아. <u>가로수 조성·관리</u>			
경사업				
자. ~ 타. (생 략)	자. ~ 타. (현행과 같음)			
3. 산림경영사업	3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
라. 산림복지시설, 수목원, 생	라			
태숲, 도시림, 생활림, 학교	<u>도시숲, 생활숲, 숲</u>			
<u>숲</u> , 숲속수련장, 산림박물	경영체험림			
관,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				
설의 설치・관리				
마. ~ 아. (생 략)	마. ~ 아. (현행과 같음)			
4. ~ 12. (생 략)	4. ~ 12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제108조(사업) ① 중앙회는 그 목	제108조(사업) ①			
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				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			

개 정 안			
1. (현행과 같음)			
2			
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			
<u>파. 임업기계장비 임대·위탁</u>			
<u>사업</u>			
3. ~ 10. (현행과 같음)		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	